

# 「KB국민인증서 Lite」서비스 이용약관

#### 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주식회사 국민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이 제공하는 KB국민인증서 Lite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고객 간의 권리,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 제2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 - 1. "KB국민인증서 Lite 서비스"(이하 "서비스"라 합니다)는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웹 기반 인증서로, 이를 활용한 간편인증 등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.
  - 2. "KB국민인증서 Lite"란 본 약관에 따라 은행이 발급하고 고객이 이용하는 인증서를 말합니다.
  - 3. "고객"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은행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KB국민인증서 Lite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.
  - 4. "이용기관"이란 전자서명법상 이용자로서 은행의 KB국민인증서 Lite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인증, 전자서명 등의 업무를 이용하는 은행 외 기관을 말합니다.
  - 5. "이용매체"란 고객이 인증서를 설치하고 이용하는 기기를 말합니다.
  - 6. "전자서명인증"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고객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  - 7. "인증서"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.
  - 8. "전자문서"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.
  - 9. "전자서명"이란 서명자의 신원 또는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나타 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.
  - 10. "전자서명인증업무"란 전자서명인증,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
  - 11. "전자서명생성정보(개인키)"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.
  - 12. "전자서명검증정보(공개키)"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.
- ② 본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.



## 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-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하고, 본 약관에 동의한 고객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② 은행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은행이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변경 7일 전에 서비스에 공지합니다. 다만 그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내용의 변경인 경우 변경 1개월 전에 서비스에 공지하고 SMS, 앱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최소 1 개월 이상 서비스에 공지하고 SMS, 앱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④ 은행이 제2항 및 제3항을 서비스에 공지 또는 고객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"약관의 변경 내용이 서비스에 공지되거나 고객에게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.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⑤ 고객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공지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
## 제4조 (약관 외 준용)
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서명법,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.

## 제5조 (계약의 성립)

- ① 서비스 이용 신청은 이용 신청자가 KB국민인증서 Lite 발급 절차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, 은행은 이용 신청자에게 KB국민인증서 Lite를 발급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됩니다.
- ② 서비스 이용 신청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
## 제6조 (서비스 이용의 제한)

- ① 서비스 이용 신청자가 제5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은 서비스 이용을 승낙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- 1. 만 14세 미만인 경우
  - 2.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경우
  - 3. 타인 명의의 신청 및 정보 도용 등 신청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 판단되는 경우



- 4. 은행이 제시하는 신원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,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에 접근하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
- 5. 약관 및 운영정책 등 은행이 정한 기준에 반하는 경우
- 6. 관련 법령상 신청자가 전자서명하는데 있어 제한이 있는 경우
- ② 만약 서비스 이용 승낙 이후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이 판명된 경우 은행은 즉시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키거나 인증서를 삭제. 폐지하는 등 적절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.

#### 제7조 (서비스의 범위)

- ① 고객은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- 1. 은행 및 이용기관의 전자문서에 대한 고객의 전자서명인증
  - 2. 은행 및 이용기관의 고객 신원확인을 위한 간편인증
  - 3. 기타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목적별 상세 내용 및 이용조건, 인증서 이용이 가능한 이용기관 등은 서비스 내별도 안내하는 바에 따릅니다.
- ③ 단, 서비스는 고객 단말기의 종류와 OS(Android, iOS) 등에 따라 구성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일부 기능의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
# 제8조 (전자서명의 효력)

-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.
-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.

## 제9조 (인증서의 이용)

- ① KB국민인증서 Lite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, 전자서명인증이 필요한 일반 전자거래 업무 분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- ② 고객은 신뢰할 수 있는 이용매체를 이용하여 은행이 요구하는 휴대폰 본인확인과 계좌 소유인 증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완료하여 자신의 전자서명정보를 생성하여야 합니다.
- ③ 고객은 정당한 이용범위 및 용도에 맞게 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며,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제공할 때에는 당해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검증정보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.
- ④ 고객은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하며, 생성 된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, 훼손 또는 도난,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



합니다.

- ⑤ 고객의 전자서명생성정보는 KB국민인증서 Lite가 발행되어 고객이 수령한 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. KB국민인증서 Lite가 만료되거나 폐지된 후에는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.
- ⑥ 고객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, 훼손 또는 도난, 유출되었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경우, 지체 없이 은행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은행이 해당 인증서를 폐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합니다.

#### 제10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
- ① 은행은 운영 및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  - 1.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확장, 교체 및 고장 등 공사, 정기점검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
  - 2.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단했을 경우
  - 3.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
  - 4. 계약 종료 등과 같은 은행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
  - 5.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사유, 내용, 기간 등을 사전에 서비스에 공지하거나 SMS, 앱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은행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(시스템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, 시스템다운 등)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 또는 통지할 수 있습니다.

## 제11조 (서비스의 수수료)

은행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은행은 이용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종류, 유효기간 및 이용 수수료 등을 사전에 서비스 에 공지합니다.

## 제12조 (은행의 의무)

- ① 은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, 고객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습니다.
- ② 은행은 고객에게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비스에 공지하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  - 1. 전자서명인증업무 휴지·정지 또는 폐지
  - 2.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양도·양수·합병
  - 3. 기타 전자서명인증업무 수행 관련 정보 등



- ③ 은행은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전자서명생성정 보를 생성하며 생성된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·훼손 또는 도난·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.
- ④ 은행은 인증기관으로서 안전하게 생성한 전자서명생성정보로 발급한 고객의 인증서에 대해 그 내용이 신청 등록된 사실과 오차가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.
- ⑤ 은행은 인증기관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·훼손 또는 도난·유출 등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서비스에 즉시 공지하며, 해당 전자서명생성정보로 발급한 고객의 인증서를 폐지하고 이를 고객에게 통보합니다. 또한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신뢰성·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합니다.

#### 제13조 (고객의 의무)

-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고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 또한 은행이 신원확인을 위하여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.
  - 1. 인증서의 발급/재발급 신청
  - 2. 인증서의 폐지 신청
  - 3. 가입자 정보 변경 등
- ② 고객은 정당한 이용범위 및 용도에 맞게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 그리고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제공할 때에는 당해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검증정보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③ 고객은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정보를 생성하며, 생성된 전 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·훼손 또는 도난·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·관리하여야 합니다. 고 객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.
- ④ 고객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·훼손 또는 도난·유출되었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경우, 지체없이 은행에 관련사실을 통보하여 은행이 해당 인증서를 폐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 니다.

## 제14조 (개인정보의 보호)

고객의 개인정보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고객이 동의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. 법령에 의하거나 고객이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은행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## 제15조 (이용계약 해지)

은행과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인증서를 폐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1.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 폐지를 신청한 경우



- 2. 고객이 타인명의 계좌,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해킹 시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 또는 이용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, 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지한 경우
- 3. 다른 회원의 권리나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
- 4. 고객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·훼손 또는 도난·유출된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
- 5. 고객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
- 6. 고객의 신원확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은행이 인지한 경우
- 7. 은행이 인증서 서비스의 안전한 제공 및 보안 유지,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8.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안상 폐지가 필요하다고 은행이 판단한 경우
- 9. 인증서가 저장된 웹 브라우저를 삭제한 경우

#### 제16조 (배상 범위 및 책임)

은행은 전자서명법, 전자서명법시행령, 전자서명법시행규칙 및 본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자서명법 제20조(손해배상책임)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해당 법령에 따라 은행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.

# 제17조 (분쟁의 해결)

본 약관 및 서비스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,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은행과 고객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며, 소송이 필요한 경우 분쟁에 관한 관할법원은 민사 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# 부 칙(2023.4.20)

제1조 (시행일) 이 약관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.

# 부 칙(2024.5.28)

제1조 (시행일) 이 약관은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.